업무 조정안

학교 보건교사

구분	현재	변경
1. 공기 질 관리	-미세먼지 대응 교육 및 교육 관련 공문처리 : 보건교사(정), 안전생활부 부장(부) -공기 질 검사 등 공문처리 : 교무기획부, 행정실 - 공기청정기 관련 업무 : 행정실 -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 업무 처리 부서 : 보건교사	-미세먼지 대응 교육 : 현행 유지 -공기 질 검사 등 공문처리 : 행정실 - 공기청정기 관련 업무 : 현행유지 (행정실) -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 업무 처리부서 : 행정실 (붙임 1,2,3,4,5,6,7,8,9)
2.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 업무	- 공문처리 : 보건교사	- 행정실 (붙임11)
3. 정수기 수질검사	- 정수기 수질검사 공문처리, 품의, 실시 등 : 보건교사	- 급식실(영양교사) 또는 행정실에서 정수기 수질검사 관련 업무 이관. (붙임 7,10)
4. 환경위생관리자	- 2022학년도 행정실담당자, 영양교사, 보건교사 (3인 복수지정)	- 2023년도 보건교사 제외
5. 학교시설방역(소독) 및 방역 인력 관리	- 방역시설소독 : 행정실 - 방역인력관리 : 채용, 품의 등 전반적 업무 : 행정실 :복무관리 - 보건교사	- 현행유지 (붙임 1, 12)

학교 업무분장시 법령, 공문, 교육부 매뉴얼에 관련 근거가 있으면 우선 적용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 해야합니다 아무리 단위학교 업무분장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만 법령과 공문, 교육부 매뉴얼에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업무분장을 적용 해야하고, 그 외 애매모호한 업무분장은 학교장 재량으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위 업무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타당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13에 근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령과 공문, 교육부 매뉴얼에 의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법령과 지침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혹은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붙임1. 경상북도교육청_정책기획관_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
붙임2. 경상북도교육청_시설과_학교시설관리(매뉴얼)
붙임3.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붙임4. 시설과-8278(2021. 9. 29.)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가이드라인 및 인증 업무 개시
붙임5.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시설 시행계획(안)
붙임6.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안내서(교육부)
붙임7. 보건교사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
붙임8. 법무법인 세종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위법성에 관한 검토
붙임9. 공기 질 업무 관련 종합 의견서
붙임10.정수기 수질검사 이관 내용(먹는 물은 식품위생에 포함)
붙임11. 2022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도교육청) 체육건강과-2629(2022. 2. 16.)
붙임12. 방역인력 채용, 품의 등 관리 업무 및 학교 시설(방역소독) 업무
붙임1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사항 안내 : 유초등교육과-1006(23.1.12.)

붙임1 2020학년도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참고안)

유·초·중·고·특수학교 공통 적용

※ 업무영역 : 교무실, 행정실, 교육지원청, ( )는 협조부서

< 해당 문서 중 6, 9페이지 71,100,102 항목 >

71	학교시설	학교 시설 관리	행정실	
		학교 환경 개선	행정실	
		교육청 발주시설 공사 지원	행정실	
		에너지 절약	행정실	
		교육시설 재난공제 업무	행정실	
100	공기질(미세먼지, 라돈 등) 관리	공기질 측정 전반	교육지원청	
		공기질 현황 관리	교무실	
		미세먼지 대응 교육	교무실	
		특정장소 공사 후 공기질 검사	행정실	
		전열 환기장치 시설관리	행정실	
		공기청정기 운용 및 관리	행정실/교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계약, 유지보수	행정실	

102	기타직 관리	복무관리(운동부 전임코치, 스포츠 강사, 보조인력 등)	교무실(행정실)	
		채용 공고 및 성범죄 조회	교무실/행정실	
		계약관리(운동부 전임코치, 스포츠 강사, 보조인력 등)	행정실	

붙임2. 경상북도교육청_시설과_학교시설관리(매뉴얼)

② 학교시설 점검 대상 및 관련 법령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소방시설	소방점검	□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월 1회 이상 소방점검: 자체 소방점검계획 수립·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직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 시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 통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방 호 원	□ 공공기관 방호원 등의 업무 - 대상: 방호원(경비업무 담당자), 일직근무자·숙직자 - 업무: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기시설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전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
	정기검사	□ 정기검사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65조
도시가스	정기검사	□ 1년마다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보험가입	□ 특정가스 사용자 보험가입: 월 가스사용량 3,000㎥ 이상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1명 □ 안전관리책임자: 1명이상, 월사용예정량이 4,000㎥ 초과 시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시설점검	□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 등 조치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정 압 기 분해점검	□ 정압기는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 실시 □ 필터는 가스공급 1개월 이내 분해점검,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 실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승강기(덤웨이터 포함)	정기검사	□ 1년마다 정기검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점검 가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관리주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물탱크	**청소**	□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	수도법 33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정화조	**청소**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하수도법 제39조
환경	**점검**	□ 일상점검: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 정기점검: <별표 1에 의함> □ 특별점검: 제1장/ 4. 점검종류 및 시기/ 다. 특별점검에 의함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환경위생 관리자	□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붙임3.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제38조(설비 관리) ① 냉난방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하면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교육시설이용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난방기구의 표면 온도는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냉난방설비는 설치된 곳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용 창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설비를 가동할 것
2. 환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할 것
3. 필터가 장착된 환기설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것

③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급수설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2. 지하수 등을 식수로 공급하는 설비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정기적인 소독, 수질 검사 등의 조치를 할 것
3. 급탕의 경우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것
4. 급수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간격과 높이에 설치할 것

제42조(실내공기질)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교육시설의 장은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기정화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2. 미세먼지 측정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붙임4. 시설과-8278(2021. 9. 29.)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가이드라인 및 인증 업무 개시 중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학교시설) 참고

01 시설안전

분야	분류항목	인증항목(기준)		배점	가산점	감점
A 시설안전	A-1 구조안전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9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6	+1	-2
		A-1-3	옹벽·석축·절토사면 등의 구조물 안전	5		-3
		A-1-4	시설물 안전(점검)등급	5		-5
	소계			25	1	-10
	A-2 전기설비	A-2-1	전기설비 점검	3		
		A-2-2	누전차단기 설치	3		
		A-2-3	수변전실 안전	4		
		A-2-4	EPS/TPS실 및 분전함 안전	4	+1	
		A-2-5	예비발전설비(비상전원) 안전	3	+1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3		
	소계			20	2	
	A-3 기계설비	A-3-1	기계실 유지관리	2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4	+1	
		A-3-3	위생·급탕설비 관리	3		
		A-3-4	승강기 안전관리	2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4	+1	
	소계			15	2	
	A-4 가스시설	A-4-1	가스시설 점검	3		
		A-4-2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설치	3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4		-1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3		-1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2		
	소계			15		-2
	A-5 소방설비	A-5-1	소방시설 점검	3		-1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5		
		A-5-3	경보설비 설치 및 성능확보	4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3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5		
	소계			25		-1
합계				100	(+5)	(-13)

붙임5.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시설 시행계획(안)

2-3-3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담당부서 : 시설과 / 담당자 : 최규단(☎054-805-3872)
김재중(☎054-805-390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건강하고 쾌적하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3. 1. ~ 12.
총사업비	839억 3,523만 원

2. 추진 배경

○ 노후 화장실, 교실환기설비, 냉난방시설, 초등 저학년 교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적기 교체를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3. 추진 내용

○ **(환기설비설치)** 학교 공기질의 개선(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제거)을 위한 전열환기설비 개선

※ 2022년부터 연 4,500실(연 소요예산액 218억 원) 이상 설치하여 2029년 이내 교실환기설비 설치 완료(남은 실 31,950실)

○ **(화장실개선)**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후 화장실 개선

※ 노후 화장실 개선에 매년 약 300억 원을 투자

-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양변기 설치 비율 제고

○ **(냉·난방시설개선)**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후 냉·난방 공조 시설의 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들의 교육활동 및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 시설의 확충

붙임 6.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안내서(교육부)

1. [제출]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자체점검 실시

: 시설과-11895(2022. 11. 14.), 후포고등학교-12694(2022. 11. 30.)

- 행정실 시설담당직원이 해당공문에 따라 실시 후 처리함.

2 점검 체크리스트 ☞ 시설별, 설비별로 작성

※ 설비의 경우 건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학교(기관)명		작성일	2022. 00. 00.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시설(설비)명		준공년도	

연번	분야	관계 법령	점검항목	결과(✔ 체크) 이상 없음	이상 있음	해당 없음
1	구조	시설물안전법 제12조	1, 2, 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 2,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육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포함 ※ '해당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1) 1, 2, 3종 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내진보강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건물 2) 감독기관의 장(교육감 등)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경우	□	□	□
2		-	내진보강공사 시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공사의 개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유의사항 등	□	□	□
3		건축법 제48조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 '해당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1) '20.12.3. 이전에 공사 완료된 건물 2) 감독기관의 장(교육감 등)이 공사를 추진한 경우	□	□	□
4		교육시설법 제13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 적절한 조치	□	□	□
5	화재	소방시설법 제24조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무교육 이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	□	□
6		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 제16조	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 금지	□	□	□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화재예방법 제36조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 층별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 게시	□	□	□
7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법 제22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 ▸ 작동기능점검(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연 1회 이상) ▸ 외관점검(월 1회 이상) 및 결과 자체 보관(2년)	□ □ □	□ □ □	□ □ □
8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전기설비 점검 ▸ 사용전 점검 ▸ 정기점검	□ □	□ □	□ □

연번	분야	관계 법령	점검항목		결과(✔ 체크)		
					이상 없음	이상 있음	해당 없음
9	화재	액화석유가스법 제37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검사		□	□	□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가스시설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가스시설의 정기검사(연 1회)		□	□	□
11		소방시설법 제24조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연 1회 이상)		□ □	□ □	□ □
12	환경·재료	학교보건법 제4조	연 2회 이상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		□	□	□
13		학교보건법 제4조의2	연 2회 이상 공기 질 측정장비(교사 안) 점검		□	□	□
14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및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 시 해당		□	□	□
15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기준 준수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기준 준수		□	□	□
16	실험·실습실[1]	-	실험·실험실의 유형별 다양성·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장치·보호시설의 설치·비치		□	□	□
17		-	실험·실험실 내 사용물질·설비·장비·장치의 안전관리		□	□	□
18	유지관리[2]	-	건축물	지붕·옥상, 벽체, 천장, 바닥, 창호 유지관리	-		
19			토목시설	비탈면, 배수시설, 바닥 포장, 담장 유지관리			
20			운동장	운동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21			설비	난방설비, 환기설비, 급수설비, 조명설비, 승강기 유지관리			
22			조경시설	관수 및 배수시설,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 옥상조경지역 유지관리			

2. 안내서 세부내용

개요

1장	총 칙	· 목적, 용어, 적용범위,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2장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3장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 피난·방화·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시공 및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5장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장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기준	· 생물·생명, 전기·전자, 예체능 등 실험·실습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P

12 환경위생점검

상세내용 ※ 안전·유지관리기준 41조 관련

-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

- 대상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 점검항목

  1) 환기·채광·조도(인공조명)·실내온도 및 습도, 소음,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 공기 질 측정 장비에 대한 점검(매년 2회 이상 실시)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2) 폐기물, 유해중금속 등

  3)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화장실

  4) 먹는 물, 상수도 및 하수도,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점검종류		내 용
일상점검	점검시기	• 매 수업일
	점검자	• (교실) 담임교사 및 수업담당교사 • (기타시설)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정기점검	점검시기	• 매 학년 : 2회 이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 점검결과 : 3년간 보존
	점검자	•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특별점검	점검시기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점검결과 : 3년간 보존
	점검자	•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에 따라 정기점검의 해당항목에 준하여 실시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붙임7.보건교사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CTU Legal Centure)

서울 중구 정동길 3, 15층 (정동, 경향신문사) / (우04518) / 전화(02)2670-9235 / 전송(02)2635-0638 /E-mail:uaua69@hanmail.net

일 자 2020. 4. 20.

수 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발 신 민주노총 법률원 / 담당변호사

제 목 보건교사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의견서는 귀 노동조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귀 노동조합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추후 위 사안이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들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의 요지

보건교사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

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 · 체육장, 교사 · 체육관 · 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 · 채광 · 조명 · 온도 · 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 석면 · 폐기물 · 소음 · 휘발성유기화합물 · 세균 ·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 · 식품 ·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 · 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3. 검토 의견

가. 쟁점의 정리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보건교사가 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애당초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없다면 보건교사가 이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5항은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 담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2항은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여, '보건교사의 임무'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구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 관리 업무'는 보건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른바 '학교 환경위생 업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기질 관련 문서처리,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품의, 점검, 현황 보고 / 수질 관련 문서처리, 음수기 수요조사, 품의, 점검, 현황 보고 / 저수조 소독 및 청소 / 건물 방역, 소독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거나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아닌 물품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즉,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사거나 관리하고, 저수조를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일은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 업무 중 하나인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의 성격을 가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위생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 아닌 시설을 관리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에 관하여 어떠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가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하나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에 의거 보건교사가 학교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조항은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범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한바, 해당 시행령 조항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거나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도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학교 환경위생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상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관련 법으로부터 보건교사의 학교 환경위생 업무에 관한 어떠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따라서 관련 법으로부터 보건교사의 학교 환경위생 업무에 관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작위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에게 법상 의무 없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강요하고 보건교사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1], 강요죄[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1)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결론 :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학교 위생에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교의 직원이 아닌 보건교사로서의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이에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교사의 입장에서 학교의 환경위생시설의 개선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건의, 권고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학교의 재산관리, 시설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는 직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보건교사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2) 학교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는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여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法律的)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1항이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법치행정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違法)하고 위헌(違憲)적인 성격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9. 공기 질 업무 관련 종합 의견서

종합 의견서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제목개정 2012. 1. 26.]

1.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 직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개선사항을 조언하는 것일 뿐 실제 업무 진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예:호흡기 학생들 -> 공기질 측정해주세요(행정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 1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위생의 유지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공백이 있다면, 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인의 관점에서 위생 문제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지만 권고나 자문역할만 있을 뿐 의료인이 직접 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지역에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 발생하면 의료인이 권고는 하지만 직접 관리하지 않음)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은 보건소가 아닌 군청에서 하고,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아닌 총무과에서 하며, 대학교에서도 간호학과 교수가 아닌 총무과에서 한다. 아파트에서도 보건소가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이 일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청 역시 공기질은 장학사가 담당하지 않고, **주무관(보건)**님이 직접와서 진행한다.
이런 행정사무를 왜 학교에서만 보건교사가 해야 하는가?
학교보건법이나 의료법, 초·중등교육법을 모두 따져보아도 교원이자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관리를 담당해야 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2019.10월 개정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매뉴얼과 도교육청 환경관리 기본방향 공문에 따르면, 일상점검 사항 중 교실에 해당하는 항목(환기, 온·습도, 소음, 공기질, 청소)이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로 확대 적용되었고**, 도교육청 공문의 **특별점검**(신축,개축,리모델링)도 계약업체 선정시 계약서에 포함하여 공기질 측정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3. 도교육청 환경관리 기본방향 중 **공기질 관련 내용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시설, 설비 개선**이 주요내용이다. **공기질 측정 후 규정 초과 항목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는 시설 및 설비개선이므로 교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설비개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실(시설담당자)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법률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률 적용의 적합성**

학교보건법 제 15조: "학교에 제 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보건교사 업무로 규정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 15조는 2021.6.8.일 개정 되었지만 시행령은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있다.(단체압력) 법과 시행령이 맞지 않을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보건법 15조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 교육부 매뉴얼을 적용해야 하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보건교사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둘째, 법률 적용의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 학교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21년 개정 되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는 1990. 12. 31. 신설 이후 현재까지 일부 용어 외 내용상 개정된 것이 없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보건교사의 직무 중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시설환경위생관리 담당에 대한 부적합성은 위에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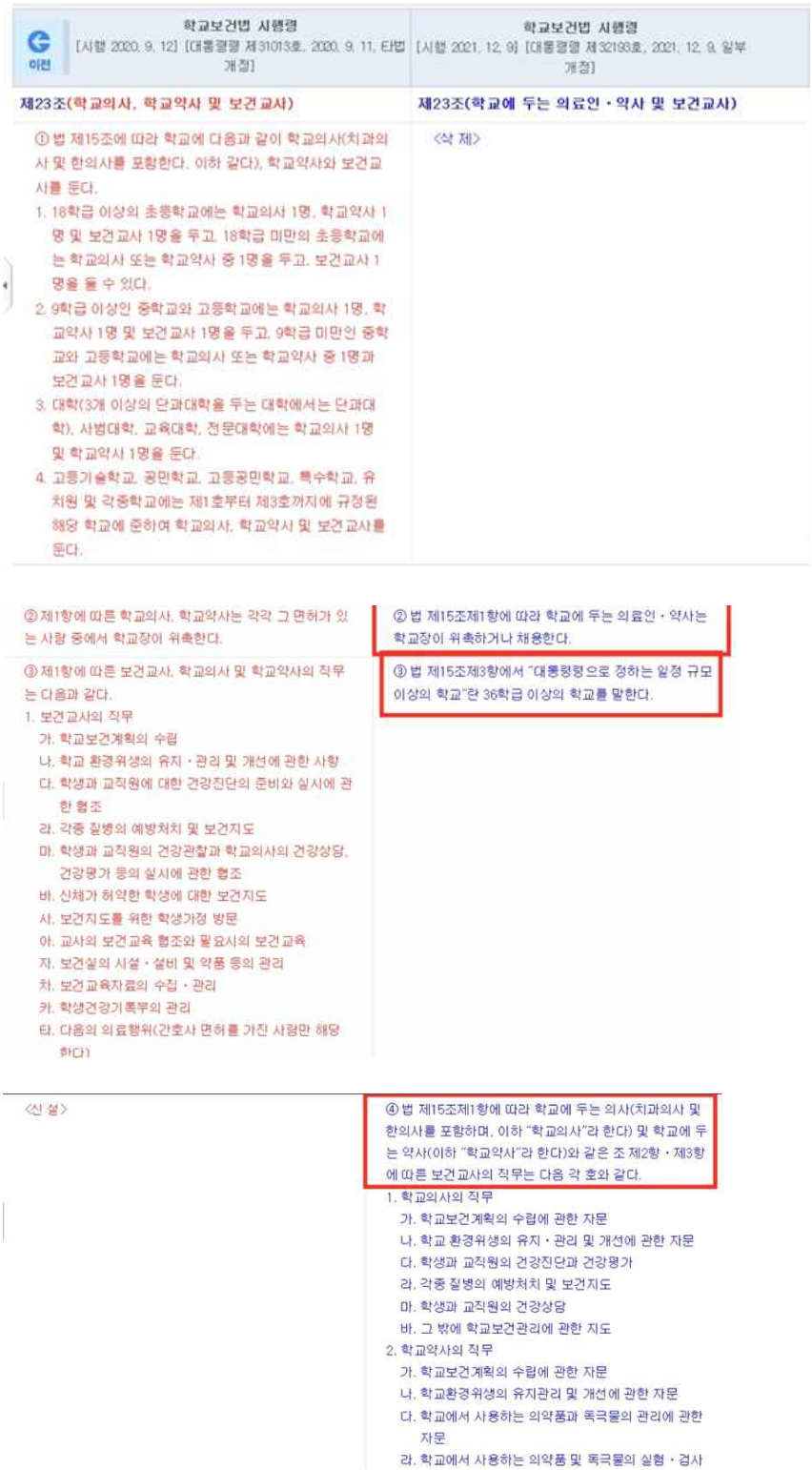

이전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3호, 2021. 12. 9, 일부 개정]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1항이 삭제되고 2항과 3항 추가되면서 직무가 4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날짜가 2021.12월로 된 것이고 직무내용은 1990년도 이후로 개정된 바가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5.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기질 측정업무**는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교사가 담당하기 부적절하고, 오히려 학교의 행정사무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공기질 업무는 행정실 시설담당자가 해야 한다.**

붙임10.정수기 수질검사 이관 내용(먹는 물은 식품위생에 포함)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6차 개정판) 출처: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	102~103P **식기 · 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식기 · 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 · 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 ·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 냉장시설에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보관 · 운반 · 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 ·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라. 식품 등의 제조 · 조리 · 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 ·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품 등의 제조 · 조리 ·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 ·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 · 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102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117P

[별지서식]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 점검표

1. 개요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설립구분			교 실 수		일반 (실), 특별(실)
전화번호			FAX 번호		
설비 현황	냉방	중앙 : 실, 개별 : 실	먹는물 시설	먹는물	상수도, 지하수, 기타
	난방	중앙 : 실, 개별 : 실		저수조	개
	환기	중앙 : 실, 개별 : 실		정수기	개(먹는샘물 : 개)
급식시설		조리실(○, ×), 식당(○, ×)	체육장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기타 탄성우레탄 (○, ×)
체육관 및 강당		체육관 : 실, 강당 : 실	기숙사		(○, ×) 신축(증·개축) 년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 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삭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6차 개정판) 출처: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	57~58P **제8절 먹는 물** **가. 목 적** 학교에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나. 유지·관리기준**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별표5】 **다. 일상점검** <table><tr><th>내 용</th><th>횟 수</th><th>점검자</th></tr><tr><td>1) 수도꼭지를 통과한 먹는 물(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등)의 색도, 탁도, 냄새, 맛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음수대 등 시설·설비가 양호하며 주변 환경이 청결할 것 3) 정수기 및 냉·온수기 취수구 및 주변이 청결할 것</td><td>매일 1회 이상</td><td>학교장 지 정</td></tr></table> **라. 정기점검** <table><tr><th>검사사항</th><th>점검방법</th><th>점검횟수</th><th>판정기준</th><th>검사기관</th></tr><tr><td>수돗물 - 수돗물 수질상태</td><td>수질상태는 일상 점검으로 대체 할 수 있음.</td><td>매일 1회 이상</td><td>탁도, 냄새, 맛 등의 이상이 없을 것</td><td>학 교 환경부령 이정한자</td></tr><tr><td rowspan="2">지하수(음용수)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 시</td><td rowspan="2">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실시한다.</td><td>매분기 1회 이상 ※전항목 검사 1회 포함</td><td>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 초과여부</td><td>전문기관</td></tr><tr><td>연중 1회</td><td>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td><td>전문기관</td></tr><tr><td>지하수(생활용수)</td><td>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td><td>3년 마다 1회</td><td>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td><td>전문기관</td></tr><tr><td>정수기 통과수 - 총대장균군 - 탁도</td><td></td><td>매 분 기 1회 이상</td><td>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적 합 할 것 - 총대장균군 : 검출되지 않을 것/ 100mL - 탁도 * 상수도 1NTU 이하, * 지하수 0.5NTU 이하</td><td>전문기관</td></tr></table>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제2021-10호, 2021.2.26.)에 따라 감염병 등 재난발생으로 학교의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점검시기 조정 가능
먹는 물 관리법	**2.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먹는 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

	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②「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 33조 2항~3항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정수기 수질검사 관련 종합 의견 >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먹는물은 식품위생에 포함된다.** 또한 먹는물 관련 공문은 학교 환경관리 공문 안에 포함 되어 있고, 여기에는 먹는물 관리법과 수도법에 관련하여 공문이 내려온다. 학교에는 정수기 설치부터 먹는물 수질원을 비치할 의무는 없으나 정수기가 이미 비치되어 있고, 수질검사 공문도 내려 오므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식품학을 전공한 영양교사가 하거나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 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하는게 타당하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교육부 감염병 매뉴얼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는 먹는물 수질관리원을 배치 안 해도 되지만 수질검사 관련 공문이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내려오는 만큼 먹는물 수질관리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가 유사한 담당자(영양 또는 행정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먹는물 수질감시원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옛날부터 보건교사가 했다는 이유로 혹은 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시행하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양교사들은 2006년부터 채용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영양사로 식품위생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또한,**먹는물은 먹는물 관리법과 수도법, 학교보건법, 교육부 매뉴얼을 적용해야 하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보건교사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이미 다른 법령에서 먹는물을 식품위생으로 봄)

붙임11. 2022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도교육청) 체육건강과-2629(2022. 2. 16.)

본 공문안에는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둘째, 학교 먹는물 관리 셋째, 공기질 관리, 넷째 석면관리, 다섯째, 학교 환경위생 개선[소음, 방역(소독)]이다. (아래 표 참고)

따라서 최종 공문 담당자는 행정실이고, 교육환경보호와 먹는물 관련은 담당자에게 공람한다.

구분	담당자(업무 연관성 및 효율성에 근거함)
1. 교육환경보호제도	학생부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자
2. 먹는물	영양교사 또는 행정실(법령에 근거하여 둘다 됨)
3. 공기질(학교시설로 확대됨)	행정실
4. 석면	행정실
5. 학교 환경개선(소음, 방역)	행정실

붙임12. 방역인력 채용, 품의 등 관리 업무 및 학교 시설(방역소독) 업무

1. 방역인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의 교육활동 보장 및 교원의 업무경감,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가. 방역인력의 역할은 학교방역 (시설물 소독), 학교소독, 발열체크, 급식실 생활지도 등 근로 계약이나 자원봉사활동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나. 방역인력(학교방역, 급식방역, 유치원 방역, 3개 부문으로 나눔) 관리업무는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영향이 낮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만든 사업이므로 방역인력 급여는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초중등교육법 제 20조 5항)

다. 중등교육과-19176(2021.8.10.)에 따라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 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초중등교육법 제 20조 4항)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336 (2021.8.9.) 중등교육과-19176 (2021.8.10.)	○ (행정업무 지원) 학교 내 교무행정지원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역량 강화 등 지속 지원 * 학교 관리자 중심, 행정실장 중심 등 자체 유형으로 여건에 맞게 운영 ※ 특히, 방역 등 보조 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

2.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에 따른 「학생감염병관리조직」 행정지원팀의 역할은 위생시설 관리, 방역/소독활동, 예산 및 행정지원이며, 행정실장이 총괄자이다.
학생감염병 관리조직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교사는 코로나 담당자로 예방관리팀 총괄자이다. 따라서 행정실장은 방역/소독의 총괄자이므로 이에 따른 시설관리를 포함한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방역인력의 근로계약 및 급여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교육부
매뉴얼(4판)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 운영
(체육건강과-3156
(20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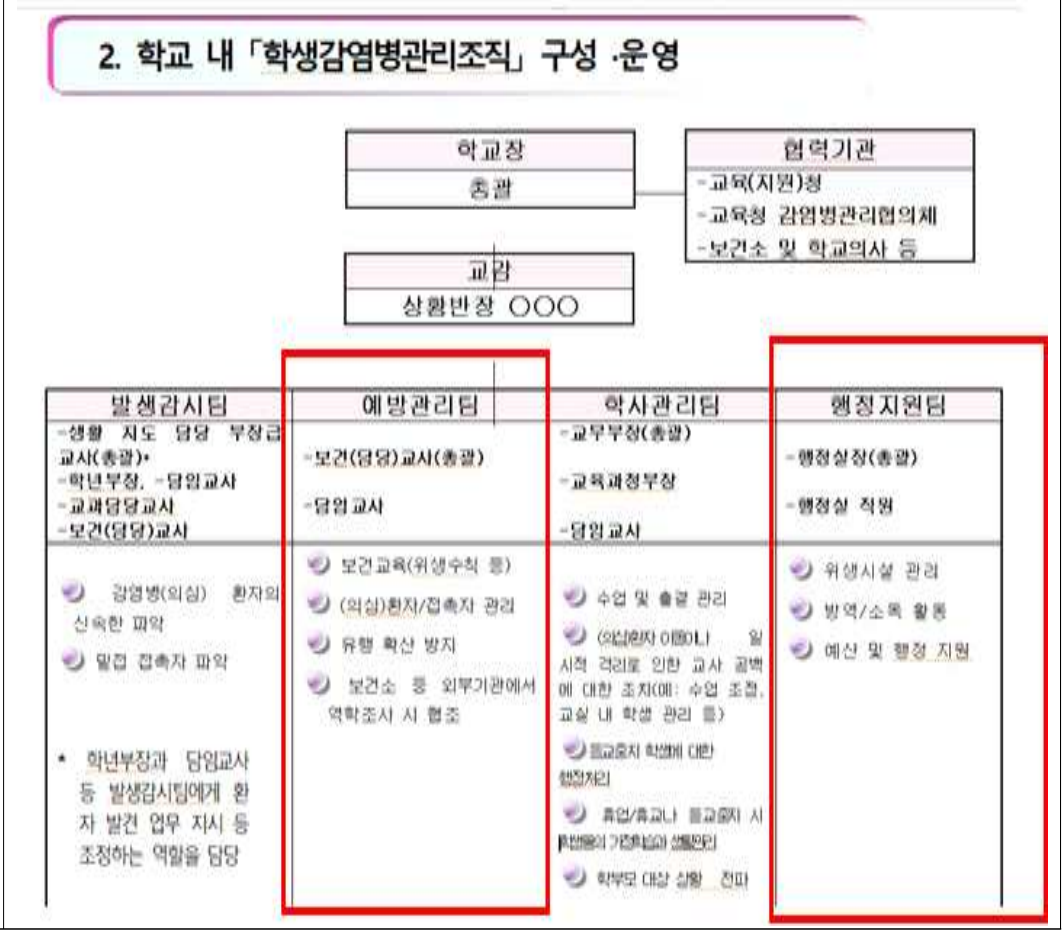

학교 방역비
지원 계획
체건과-5002
(2021.3.16.)

참고 **학교 소독 강화 방안**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4판)」

※ 시설 소독은 방대본·중수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4판) 지침을 따르며, 본 내용은 학교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안내한 것이므로,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용

<소독의 종류 및 적용범위 등>

구분		적용 범위	시행주체
정기 소독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전체 소독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전문 소독업체 위탁
일상 소독		학기 중 취약 시설 관리를 위한 소독	학교 자체 소독
임시 소독	행사 개최시 (시설임대 포함)	다수가 이용한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전문 소독업체 위탁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소독	

방역인력지원사업 체건과-13325 (2021.7.16.)	**5 행정사항** □ 예산교부: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해 단위학교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 (지원금은 추후 교부) □ 방역활동 인력 업무가 코로나19 담당자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학교 상황에 맞게 역할분담 및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여 추진할 것
학교 방역비 지원 계획 체건과-5002 (2021.3.16.)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희석액 1000ppm) ※ 10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2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 화장실은 소독제(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를 사용하여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에 뚜껑이 있는 경우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3. 학교방역인력(학교전체 방역, 급식, 유치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학교전체, 급식, 유치원 등 부서별로 인원을 채용하는 만큼 총괄자는 행정실장이며, 계약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 정책기획관-1998 (2020.2.14.)	<table><tr><td>102</td><td>기타직 관리</td><td>복무관리(운동부 전임코치, 스포츠강사, 보조인력 등)</td><td>교무실/행정실</td><td></td></tr><tr><td></td><td></td><td>채용 공고 및 성범죄 조회</td><td>교무실/행정실</td><td></td></tr><tr><td></td><td></td><td>계약관리(운동부 전임코치, 스포츠강사, 보조인력 등)</td><td>행정실</td><td></td></tr></table>
방역인력지원사업 체건과-11330 (2022.6.27.)	나. 방역인력 채용기간: 2022. 8. ~ 2023. 2.(2학기 및 겨울방학) 다. 방역인력 업무(각 분야별 수요 제출) 1) 학교방역: 학교 방역 및 소독, 발열체크, 거리두기 지도, 교실 위생관리, 보건교사 지원 등 2) 유치원: 유치원 방역 및 소독, 발열체크, 교구소독, 교실 위생관리, 급식 생활지도 등 3) 급식: 급식실 방역 및 생활지도, 배식(보건증 필요), 및 퇴식보조 등(단, 조리실 내 업무 불가)

4. 교육부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 담당자는 복수로 지정해야 하고, 보건교사 외에 1명 더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코로나 관련 업무가 모두 보건교사에게 위임된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총괄자에게 모든 업무가 부과되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또한 감염병은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 협조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4개 부서의 역할 분담에 맞게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7판) 체육건강과-8414 (2022.4.27.)	② 대응 및 협조체계 ○ (학교 내) 학교장(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역할 분담 등 기존 체계 유지 ※ '코로나19 담당자' 복수 지정,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예방 활동을 총괄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 체육건강과-3156 (2020.2.28.) 학생감염병관리 조직 활성화 운영 체육건강과-1981 (2020.11.20.)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부 교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감염병관리조직(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구성별 역할을 세분화하여, 각 구성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여 대응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제2차 개정판, 2016. 12.)(초·중·고, 특수학교용: 상세본)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대응지침에 탑재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7판) 체육건강과-8414 (2022.4.27.)	또한, 본 공문을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공람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특정부서 및 담당자에게 치중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사항 안내
: 유초등교육과-1006(23.1.12.)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309P)
4.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 기준

구 분	정의 및 판단기준(예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